##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4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박수민·이헌승·임종득

이인선 • 조지연 • 김선교

김민전 • 고동진 • 정성국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 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 가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 가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 가용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수급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급된 급여의 환수에 대해서는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관한 적용례)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
	금 수급권(소송에 따라 분할연
	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수급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
	급된 급여의 환수에 대해서는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u> 적용한다.</u>